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538414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541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5384142 판결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 종결 2016. 7. 14.

판결 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26,437원과 그
중43,441,193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선정자 C는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5. 6. 22. 접수 제13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9.경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간 2011. 3. 9.부터 2012. 3.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후 보증기간은 2016. 3. 4.까지, 보증원금은 42,5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선정자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선정자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선정자 회사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금 등 피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선정자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의 비용 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선정자 회사는 위 신용보증일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6. 22. 이자연체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우리은행의 신용보증사고발생통지에 따라 선정자 회사를 대위하여 2015. 10. 13. 우리은행에 43,441,193원을 변제하였고,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 비용으로 85,244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0.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5. 6. 22. 접수 제13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회사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26,437원(= 대위변제금 43,441,193원 + 비용 85,24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3,441,193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선정자와 피고에게 모두 송달된 2016. 3. 23.까지는 약정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5. 6. 10.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지않았지만, 그

이전인 2011. 3. 9.경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5. 6. 22. 선정자 회사가 위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10. 13. 신용보증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2.항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구상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재산상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6. 1.0경 피고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소극재산

- ① 원고에 대한 2.항 기재 채무 : 43,526,437원
- ② 농협협동조합중앙회 : 179,300,000원
- ③ 지역농축협김화농협에 대한 채무 : 10,000,000원
- ④ 우리여신관리부 관리 채무 : 46,976,000원
- ⑤ 우리총괄본부 관리 채무 : 139,830,000원
- ⑥ SC본부총괄 관리 채무 : 30,690,000원
- ⑦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 146,250,000원8 오가농협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 160,000,000원
- ⑨ 소극재산 가액 합계 : 756,572,437원

2) 적극재산

- ① 강원 철원군 D 답 4494㎡ 및 E 297㎡(이하 'F리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시가 0원[F리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31,719,420원(= (4494㎡+ 297㎡)x 6620원/㎡)인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1. 채무자 선정자 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¹⁾). 피고는 F리 각 부동산의 시가가 102,500,000원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리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여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음은 변함이 없다.)

② 파주시 G아파트 107동 903호(이하 '파주 아파트'라 한다) : 시가 91,527,400원[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주 아파트의 시가는 233,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한편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8. 채무자 선정자 회사, 근저당권자 대한민국, 채권최고액 141,472,6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주 아파트의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액은 91,527,400원(=233,000,000원 - 141,472,600원) 상당이 된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 최대 시가 384,258,000원(갑 제8호증)4 적극재산 가액 합계 : 최대 475,785,400원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소유하던 적극재산 중 F리 부동산의 적극재산 가치가 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다른 적극재산인 파주 아파트에도 적극재산 가치 산정시 고려한 채무자 선정자 회사로

된 141,472,600원의 근저당 외에 피고가 채무자로 된채권최고액 215,160,000원인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356,632,600원으로 위 아파트의 가액 233,000,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채권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채권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적극재산으로 유일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그러한 주요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무초과상태에서 선정자C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와 다른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나 그 처분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 수익자인 선정자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수익자의 선의 항변

피고는 선정자 C가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매매계약이 피고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채무자인 자신이 선정자 C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법률행위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정자 C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선정자 C에 대한 위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선정자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

목 록

1. 총남 예산금 대 339㎡

2. 총남 예산금 지상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0㎡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88.25㎡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7.5㎡ 끝.

선 정 자 명 단

1. A
2. 주식회사 B
3. C. 끝.

1)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